	_	보도지	- 료	4=
국토교통부	배포일시	2022. 2. 23.(수) / 총 8매(본문3, 참고5)		다구만뉴딜
	담당 한전공단 부서	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	과장 김은정, 사무☎ (044) 201-3855,	
환경부		환 경 부 교통환경과	과장 황인목, 사무☎ (044) 201-6920,	
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완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		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정책처	• 처장 김용달, 차장 • ☎ (054) 440-3010,	
		한국환경공단 운행차관리부	• 부장 송인범, 대리 • ☎ (032) 590-5187,	· ·
보 도 일 시		2022년 2월 2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23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부정검사 의심 지동차 민간검사소 187곳 점검… 25곳 업무정지

- 국토부·환경부 특별점검서 결과조작·검사생략 등 25곳 적발
- 상시 적발체계 운영·컨설팅 실시 등 부실검사 근절 위한 관리감독 강화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와 환경부(장관 한정애)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,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*(이하 '민간검사소')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('22.1.5.~1.25.)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.
 - * 지정정비사업자:「자동차관리법」제45조(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)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(총 1,774여 곳)
 -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·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'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하였고, '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.
 - 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튜닝 묵인, 검사결과 조작,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**5개 점검팀**을 구성하여 **전국 동시 합동점검** 방식으로 진행됐다.

- 점검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*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,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선정했다.
 - *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: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
- □ 점검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불법·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**187곳**을 점검한 결과, 점검대상의 **13.4%인 25곳**을 적발했다.

행정처분 구분 점검 검사소 위반 검사소 업무정지(건) 직무정지(명) '21년 하반기 187 25 (13.4%) 25 25 '21년 상반기 176 37 (21.0%) 37 33 '20년 하반기 184 35 (19.0%) 35 31 '20년 상반기 174 20 (11.5%) 20 17 '19년 하반기 197 37 (18.8%) 33 36 '19년 상반기 47 (17.3%) 271 47 46

<연도별 점검결과>

- *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(검사소)와 직무정지(기술인력)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
-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(44%)으로 가장 많고, 검사 장면·결과 기록 미흡 9건(36%),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(12%), 시설·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(8%) 등이다.

<세부 위반사항>

위 반 내 용			비율(%)
구분	구분 세부 내용		100
검사항목 일부 생략	외관·기능 검사 일부생략, 속도계검사 생략	11	44
검사장면 등 기록 미흡 검사사진 식별불가, 검사사진 미촬영		9	36
장비정밀도 유지 위반	측정기 스팬 미교정, 표준가스 교정 불량	3	12
시설·장비기준 미달	달 영상촬영장치(카메라) 불량		4
검사결과 조치 불량	검사결과표 미교부 및 후퇴등 미조치	1	4

-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(25곳) 및 직무정지(25명)의 행정처분을 부과할예정이다.
- 검사소 종류별^{*}로는 종합검사소(12.7%) 보다 **정기검사소**(14.4%)가 **다소 많은** 것으로 나타났고, 지역별로는 **광주·충남·강원·전북**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.
 - * 종합검사소(적발/점검) 12.7%(15곳/118곳), 정기검사소 14.4%(10곳/69곳)
 - ** 종합검사 : 대기관리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서 정기검사, 배출가스 정밀검사,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: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 - **적발률이 0**%인 서울·부산·대구 등 **8개 지자체**의 **65곳** 검사소에 대해서는 **상시점검**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.
- □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"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^{*}('21.3)하였으며, 상시 적발체계 운영 및 검사원 역량 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"면서,
 - * 무자격자 검사시 2차, 다른사람 명의 검사시 3차 적발시 지정취소 \rightarrow 적발 즉시 취소, 검사결과 허위작성, 기계·기구 설정값 조작시 업무정지 30일 \rightarrow 60일로 대폭 강화
 - "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, 지자체 등 **관계기관과 협의**하여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**관리를 강화**해 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김태흥 사무관(☎ 044-201-385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운행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종류

□ 검사종류

검사종류	내 용	관련 법령
정기검사	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	자동차관리법 제43조
튜닝검사	사도자는 트니아 경우에 시시	자동자판리합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
임시검사	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	네기된경포인탑 제02호
1 2 9 7 7 1	정기검사, 정밀검사*, 특정경유자동차검사**를	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
	통합하여 실시	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

- *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(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)
- **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(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)

□ 검사주기

○ 정기검사

구	분	검사유효기간
비사업용 승용	2년*	
사업	1년*	
경형·소형의	1년	
사업용 대형	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	1년
화물자동차	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	6월
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	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	1년
및 사업용 대명 승합자동차	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	6월
그 HF이 지도친	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	1년
그 밖의 자동차	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	6월

^{*}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 4년, 사업용 승용 2년

○ 종합검사

검사 대상		적용 차령(車齡) 검시	- 유효기간	
스요지도원	비사업용	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	2년	
승용자동차	사업용	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	1년	
경형·소형의 승합	비사업용	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	1년	
및 화물자동차	사업용	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	1년	
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		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	6개 월	
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		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	- 1년, 이후부터는 6개월	
중형 승합자동차	비사업용	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	- 1년, 이후부터는 6개월	
	사업용	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	- 1년, 이후부터는 6개월	
그 밖의 자동차	비사업용	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	- 1년, 이후부터는 6개월	
	사업용	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	- 1년, 이후부터는 6개월	

참고 2

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 (21.12월 기준)

7 8	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			
구 분 	계	종합검사	정기검사	
계	1,774	1,329	445	
서 울	58	57	1	
부 산	79	79	0	
대 구	72	72	0	
인 천	65	64	1	
광 주	50	50	0	
대 전	42	42	0	
울 산	48	48	0	
경 기	393	375	18	
강 원	100	7	93	
충 북	87	69	18	
충 남	132	124	8	
전 북	8	8	0	
전 남	111	59	52	
경 북	130	61	69	
경 남	182	101	81	
제 주	168	113	55	